

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

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(2019.6.21.)

#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

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[ 전문위원 최채환 ]

# [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]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9. 5. 30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9. 5. 31.

### 2. 제안사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·운영 중인 기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1조에 근거하여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.

### 3. 기금개요

#### 가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42조 : 재산과 기금의 설치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

#### 나. 계획의 변경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.

## 4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

(단위 : 천원)

| 기 금 명         | 2018년말<br>조 성 액<br><u>(a)</u> | 2019년도<br>기금운용 계획 |                   | 2019년도말<br>조 성 액<br><u>(d)=(a)+(b)-(c)</u> | 증 감<br><u>(e)=(d)-(a)</u>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 입<br><u>(b)</u> | 지 출<br><u>(c)</u>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합계(8개)        | 12,816,310                    | 100,805,797       | 695,550           | 112,926,5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,110,247               |
| 총 무<br>위 원 회  | 재정안정<br>화적립금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  | 100,000,000       | 0  | 100,000,000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식품진흥<br>기금                    | 77,506            | 26,310            | 15,1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8,706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중소기업<br>육성기금                  | 6,416,976         | 107,100           | 210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,314,076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사회복지<br>기금                    | 3,362,582         | 176,726           | 106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,433,308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아름예술제<br>진흥기금                 | 500,452           | 6,444             | 6,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,496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체육진흥<br>기금                    | 1,084,206         | 17,871            | 20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82,077                 |
| 산업건설<br>위 원 회 | 재난관리<br>기금                    | 1,092,362         | 445,000           | 329,4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207,922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옥외광고<br>발전기금                  | 282,226           | 26,346            | 8,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99,972                   |

## <재정안정화적립금 변경안>

(단위:천원)

| 수입변경계획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지출변경계획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항목        | 당초<br>수입액 | 변경<br>수입액   | 증감          | 항목          | 당초<br>지출액 | 변경<br>지출액   | 증감          |
| 합 계       | 0         | 100,000,000 | 100,000,000 | 합 계         | 0         | 100,000,000 | 100,000,000 |
| 전입금       | 0         | 100,000,000 | 100,000,000 | 비용자성<br>사업비 | 0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예치금<br>회수 | 0         |             | 0           | 예치금         | 0         | 100,000,000 | 100,000,000 |

## 5. 검토의견

### ■ 재정안정화적립금 <기획예산담당관> [p23]

#### ◎ 재정안정화 기금 개념

- 경기변동에 따르는 유동적인 세입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이 큰 폭으로 증대 시 적립하고, 하락할 때 기금을 운용
- 세입감소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, 대규모 재해·재난 발생 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, 대규모 건설사업의 재원으로 활용

#### ◎ 법적 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14조(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「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## ◎ 우리군 재정여건

### ○ 경상일반재원 세입

(단위 : 억원)

| 구 分   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 비 고         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지 방 세 | 196   | 213   | 241   | 267   | 269   |              |
| 세외수입  | 141   | 161   | 155   | 190   | 189   |              |
| 보통교부세 | 1,981 | 1,855 | 1,798 | 2,250 | 2,369 | 2,720(2019년) |
| 조정교부금 | 115   | 175   | 188   | 271   | 212   | 240(2019년)   |

### ○ 순세계잉여금

(단위 : 억원)

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 비 고 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423   | 556   | 797   | 1,338 | 1,744 | 일반회계 |

### ○ 재난·재해 목적 예비비

(단위 : 억원)

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(추정)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250   | 261   | 316   | 653   | 1,349 | 1,952*    |

\* 1,952억 원 = (순세계잉여금 발생 1,744억 원 - 반영 729억 원) + 937억 원

## ◎ 적립요건

| 구분       | 지방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순세계잉여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정교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통교부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적립<br>요건 | ①최근 3년 평균<br>증가율을 10%<br>이상 초과 | ②최근 3년 평균<br>금액의 120%를<br>초과한 경우 | ③최근 3년 평균<br>금액의 110%를<br>초과한 경우 | ④최근 3년 평균<br>금액의 110%를<br>초과한 경우 |
| 적립<br>비율 | ①초과분의 30%<br>이상                | ②초과분의 30%<br>이상                  | ③초과분의 30%<br>이상                  | ④초과분의 20%<br>이상                  |

## ◎ 적립금 분석

### ○ 최근 3년간 세입 여건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分    | 2015년   | 2016년   | 2017년   | 3년 평균   | 비 고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|
| 지방세    | 21,316  | 24,112  | 26,748  | 24,059  |     |
| 순세계잉여금 | 55,609  | 79,729  | 133,769 | 89,702  |     |
| 구 분    | 2016년   | 2017년   | 2018년   | 3년 평균   | 비 고 |
| 보통교부세  | 179,841 | 225,037 | 236,880 | 213,919 |     |
| 조정교부금  | 18,798  | 27,123  | 21,089  | 22,337  |     |

○ 적립 가능액 : 103,585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      | 지방세               | 순세계<br>잉여금         | 보통<br>교부세          | 조정<br>교부금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3년 평균(A)        | 24,059            | 89,702             | 213,919            | 22,337                |    |
| 적립요건(B)         | 29,655            | 107,642            | 235,310            | 24,570                |    |
| 세입(C)           | 26,925<br>(2018년) | 174,462<br>(2018년) | 272,075<br>(2019년) | 24,034<br>(2019년, 추정) |    |
| 적립 가능액<br>(C-B) | 적립불가              | 66,820             | 36,765             | 적립불가                  |    |

## ◎ 검토의견

- 경상일반 세입재원 중 보통교부세, 지방세, 조정교부금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
-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 예비비로 편성, 순환 반복
- 여유 재원 1,000억원을 「재정안정화 기금」으로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하고
-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 6. 참고자료

### 관련법령 발췌

#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11.5.30]

**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11. 5. 30.]

## □ **지방자치법**

**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**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조례의 제정 · 개정 및 폐지
2. 예산의 심의 · 확정
3. 결산의 승인
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· 수수료 · 분담금 ·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
- 5. 기금의 설치 · 운용**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· 처분
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· 처분
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9. 청원의 수리와 처리

10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
11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## □ 지방재정법

**제14조(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,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"재정안정화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 10. 24.]

# 타 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 사례

(단위 : 억 원)

| 지자체명 | 조례제정일자     | 기금조성액 | 목 표 액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경상남도 | '16.12.19. | 100   | 1,000 |
| 진주시  | '18. 3.16. | 2,000 | 2,000 |
| 밀양시  | '17. 3.23. | 225   | 225   |
| 양산시  | '17. 7.12. | 40    | 100   |
| 의령군  | '17. 4.12. | 20    | 100   |
| 창녕군  | '17. 4. 3. | 20    | 100   |
| 고성군  | '17. 1.26. | 40    | 100   |
| 남해군  | '17. 4. 7. | 20    | 100   |
| 산청군  | '17. 3.17. | 20    | 100   |
| 함양군  | '17. 3.15. | 120   | 160   |
| 합천군  | '17. 4. 1. | 20    | 100   |
| 무안군  | '18.12.28. | 700   | 1,000 |
| 해남군  | '19. 2.26. | 1,000 | 1,500 |